

법률자문 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서

주식회사 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의뢰인”이라 한다)와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(이하 “법무법인”이라 한다)은 “의뢰인”이 수행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지구 A-11BL 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(이하 “본건 사업”)상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기간과 관련된 법적 이슈 검토에 대한 법률자문용역을 “의뢰인”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다 음

제1조 [“법무법인”의 용역 제공]

“법무법인”은 “의뢰인”에게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제2조 소정의 법률자문용역을 성실히 제공한다.

제2조 [용역의 내용]

“법무법인”은 “본건 사업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을 “의뢰인”에게 제공한다.

1.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기간에 관한 표준사업약정 등에 대한 해석, 표준사업약정 등의 변경 약정 체결 여부 및 체결 절차에 관한 검토, 법률의 견서 작성

제3조 [보수]

“법무법인”의 법률자문용역에 대한 보수는, “법무법인”이 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처리(본 약정서의 체결 이전에 본건 프로젝트를 위하여 “법무법인”이 “의뢰인”에게 기 제공한 법률자문 포함)에 소요된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“법무법인”의 담당 전문가 별 시간당 요율(hourly rate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한다. 본 법률자문용역의 담당 전문가 및 시간당 요율은 별첨과 같다.

제4조 [약정기간]

약정기간은 당사자들이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제2조 소정의 용역 업무가 모두 종료되는 날로 한다.

제5조 [비밀 준수]

“법무법인”은 본 약정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약정기간 중이거나 약정 종료 후에라도 “의뢰인”의 서면으로 된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 [자료의 보관 책임 등]

- (1) 본건 약정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“의뢰인”이 “법무법인”에게 제공한 일체의 원본 서류와 자료는 손상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“법무법인”은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- (2) “법무법인”은 본 약정이 종료한 후 전항의 원본 서류와 자료의 처리에 관하여 “의뢰인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“의뢰인”이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“법무법인”이 임의로 폐기하여도 “의뢰인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[손해배상 책임]

- (1) “법무법인”이 지정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“의뢰인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“법무법인”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 단,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“법무법인”의 구성원 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본다.
- (2) “법무법인”이 지정한 담당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·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지휘·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 [이해의 상충]

“법무법인”은 약정기간 중 본 약정과 관련하여 “의뢰인”의 이익에 상반되는 고객을 위하여는 법률자문을 할 수 없으며, 또한 본 약정과 관련하여 “의뢰인”의 이익과 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[해석의 협의결정]

본 약정 내용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또는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변호사법,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관행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·결정한다.

제10조 [관할에 대한 합의]

본 약정으로 인하여 당사자들 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. 다만, “의뢰인”은 관할의 합의가 “의뢰인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“법무법인”에게 관할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법무법인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한다.

위 내용의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. . .

“의뢰인” : 주식회사 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[*]
대표이사



“법무법인” :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
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
대표이사 변호사 김성진



별첨

담당전문가 및 시간당 요율

(단위: 원)

담당전문가	구분	시간당 요율
강 현	Partner	840,000
윤 민 진	Associate	260,000

※ 위 요율은 본 약정서 체결 현재의 시간당 요율이며, 담당변호사의 연차 상승에 따른 본 법인 소정의 시간당 요율이 변경 적용됨.

